

# 2026 제주다양성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다양성영화 지원을 통해 완성된 장편영화의 안정적인 극장 개봉을 지원함으로써 제주 기반 영화의 산업 유통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 영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6 제주다양성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27.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제주다양성영화 선정작의 안정적인 극장 개봉 지원
- 산업형 개봉 전략과 공공형 상영 프로그램의 병행 추진
- 배급 실행 경험 축적을 통한 제주 영화인의 유통·배급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 제주다양성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6. 12. 10.
- 지원내용 : 전국 단위 극장 개봉 실행을 위한 배급·유통 비용 지원  
(배급 직접비, 배급 대행비, 관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대상 :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제작·후반작업, 시나리오 공모전 선정작 중 2026년 내 극장 개봉 예정인 장편영화(60분 이상)
- 신청자격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가.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나. 해당 작품의 저작권 또는 배급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연출자(개인 감독)
    - ※ 신청자는 작품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 제외
- 필수요건
  - 가. 배급 계약 체결 완료 작품 또는 배급계약 예정 작품(배급의향서 제출 필수)
    - ※ 배급계약 체결 완료 작품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배급계약 예정 작품은 배급의향서(또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정식 배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급의향서란 배급사가 해당 작품의 배급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배급 범위, 예정 개봉 시기,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기한 내 배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2026년 내 극장 개봉 실행 계획 및 최소 개봉관 확보 전략 제출

다. 제주 지역 내 관객 참여형 상영 프로그램(GV, 시사회 등) 운영계획 포함

- 제주 지역 관객 참여 프로그램은 도내 극장을 원칙으로 하되, 영화 상영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음
- 무료 상영의 경우 사전 공개 모집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람객 명단, 현장 사진 등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라. 개봉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KOBIS)에 등록되는 유료 상영을 의미함

○ 지원규모 : 1편 내외, 총 지원금 20,000천 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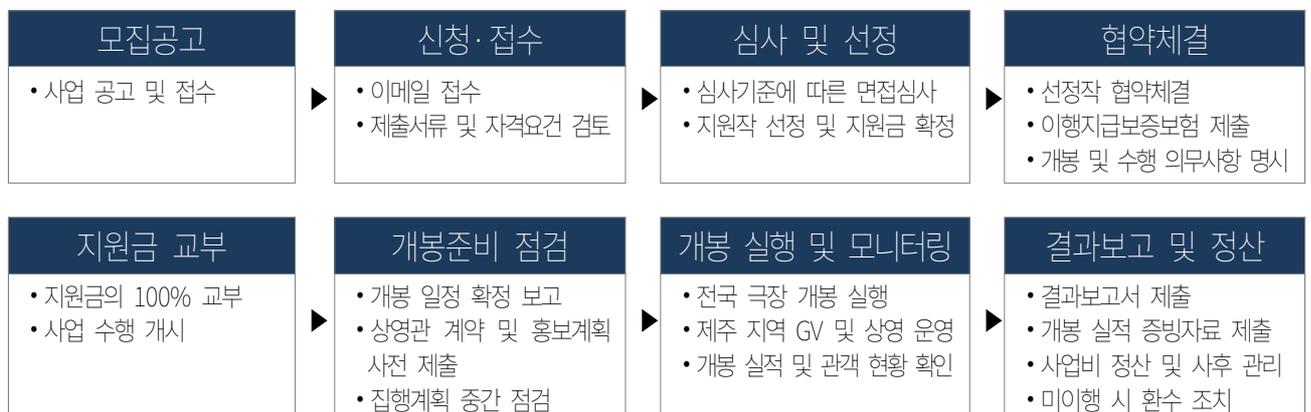
- ※ 최종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매칭
-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편수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 적격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 사용 용도 : 배급·유통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구분    | 사용 용도   |
|-------|---|
| 사무관리비 | • DCP 제작 및 복사, 상영본 운송비, 등급분류 수수료, 통합전산망 등록 비용 등 |
| 광고선전비 | • 포스터·예고편 제작, 광고, SNS 홍보 등 (총 지원금의 20% 이내)      |
| 행사운영비 | • 시사회 대관료, GV 운영비(모더레이터, 게스트 사례비 등) 등           |
| 지급수수료 | • 배급대행비, 회계감사 수수료                               |

- |          |  |
|----------|--|
| 집행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음료비, 교통비, 주유비, 숙박비 등 진행성 경비 집행 불가</li> <li>- 자산 취득비 집행 불가(장비·물품 구입 등)</li> <li>- 상근 인력 인건비 집행 불가</li> <li>- 협약체결 이전 집행분 인정 불가</li> <li>- 타 지원사업과 동일 항목 중복 집행 불가</li> </ul> |
|----------|--|

○ 운영절차



###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2. 27.(금) ~ 3. 19.(목), 21일간

○ 접수기간 : 2026. 3. 11.(수) ~ 3. 19.(목) 14:00까지, 9일간

※ 접수 마감일(3월 19일 목요일 14:00)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lick0925@ofjeju.kr)

※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064-735-0622)

※ 제출서류(양식)는 진흥원 누리집(<https://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가능(진흥원 본원 2층 콘텐츠육성팀)

### ○ 제출서류

| 첨부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1  | 지원신청서(양식)            |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 2  | 사업수행계획서(양식)          | · 개봉 목표 시기 및 개봉관 확보 전략 구체적 기재                            |
| 3  | 세부 예산계획서(양식)         | · 항목별 산출근거 필수 작성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 · 감독 및 주요인력 전원 자필 서명 필수                                  |
| 5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양식)       | · 허위, 누락 시 제재 또는 사후 적발 시 조치                              |
| 6  | 평가위원 추천표(양식)         | · 무작위 기재 필수, 미작성 시 접수 불가                                 |
| 7  | 저작권 및 배급권 보유 확인서(양식) | · 저작권 귀속 구조 명확히 기재<br>·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 동의 필요         |
| 8  | 분쟁사실 확인서(양식)         | ·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 9  | 순제작비 확인서(양식)         | · 허위 기재 시 지원 취소 가능                                       |
| 10 | 개봉 실행 협약서(양식)        | · 개봉 미이행 시 지원금 전액 또는 환수 가능                               |
| 11 | 제작자 동의서(양식)          | · 감독 단독 신청 시   |
| 12 | 배급계약서 또는 배급의향서(협약서)  | · (체결완료)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배급 범위 명시<br>· (계약예정) 배급의향서 또는 협약서 |
| 13 |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작 협약서 사본  | · 기존 지원사업 의무사항 이행 완료 작품에 한함                              |
| 1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
| 15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
| 16 |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또는 신청서    | · 협약체결 전 등급분류 완료 권장                                      |
| 17 | 극장 상영 계약서(해당 시)      | · 상영 확정 일정 명시 권장<br>· 협약 후 계약 취소 시 즉시 통보 의무              |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변환 후 1개 PDF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누락, 서명 미비, 필수 항목 미기재 시 별도 보완 없이 심사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개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권리관계 미해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 ※ 선정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해지 및 환수 조치 가능
- ※ 제출된 계획은 협약 이후 임의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수

## ○ 접수 및 문의

| 담당자              | 메일주소                | 문의전화         |
|------------------|---------------------|--------------|
| 콘텐츠육성팀 고경욱 주임연구원 | click0925@ofjeju.kr | 064-735-0622 |

## 4.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 지원조건

- 가. 최종 확정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기준으로 정산함
- 나. 협약체결 시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함
  - ※ 보증보험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이며 보증보험 발권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개봉 의무
  - 2026년 12월 10일 이내 전국 6개관 이상 유료 개봉 완료
  - 상기 개봉관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극장 1개관 이상 포함 필수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상설 영화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극장)에 한함
  - 제주 지역에서 상영과 연계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 2회 이상 운영
  - 각 개봉관은 통상적인 극장 개봉 관행에 따른 최소 1주 이상 상영을 원칙으로 하되, 상영일수 및 회차는 상영관 편성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개봉’은 영화관과의 정식 상영 계약에 따른 유료 상영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KOBIS)에 등록되는 상영을 의미함
- 라. 협약기간 및 정산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은 협약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마. 배급대행 및 홍보비 집행 기준
  - 배급대행 계약이 홍보를 포함한 통합금액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홍보성 직접 집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출·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20% 한도에 포함함
- 바. 회계감사
  - 본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선정자는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 성과 활용 내역 제출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국내외 개봉,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 내역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아. 지원 사실 표기 의무

- 최종 상영본(엔딩 크레딧) 및 주요 홍보물(포스터, 예고편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아. 자료 제공 협조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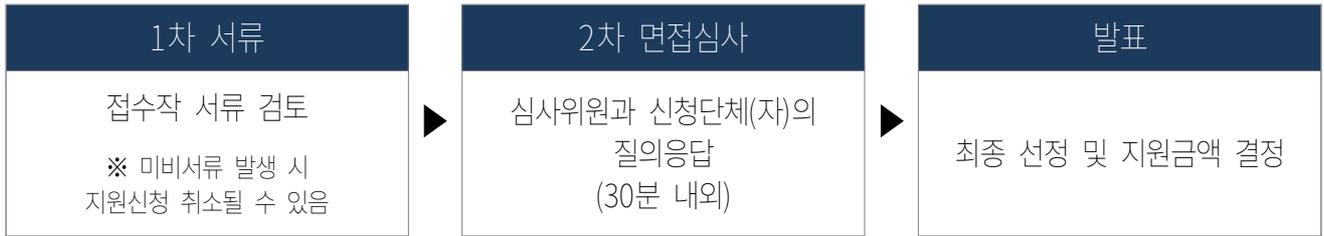
- 진흥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물 및 수행 정보를 연구 및 정책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시 신청자(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참여제한**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가. 개봉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배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작품
- 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과제 목표, 산출물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 기관 포함)로부터 중복하여 유통·배급 지원을 받은 경우
  - ※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유통·배급 지원 사업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 예산 중복 지출 및 증빙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진흥원 및 타 제작지원에도 통보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사)에게 있음
- 라. 신청일 기준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개인
- 마.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완료/미납 중이거나 진흥원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개인인 경우
- 바.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 「영화인 신문고」 기준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아.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자.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차.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5.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배급·마케팅·제작·영화산업 등)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일정 : 2026년 3~4월 중 (※ 진흥원 내·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



※ 1차 서류 통과 신청단체(자)는 개별 연락을 통한 면접일시 안내 예정

## ○ 심사기준

| 심사기준          | 심사항목   | 배 점         |
|---------------|--|-------------|
| 작품 완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및 표현력</li> <li>• 주제의식의 명확성 및 독창성</li> </ul>                               | 30점         |
| 개봉 실행 및 배급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봉지원의 효과성 및 실현 가능성</li> <li>• 배급 전략의 구체성 및 실행력</li> <li>•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li> </ul> | 40점         |
| 제주 지역성 기여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지역 내 상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li> <li>• 제주 지역 관객 접근성 확대 및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기여도</li> </ul> | 20점         |
| 관객 확산 및 공공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V·시사회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li> <li>• 관객 확대 전략의 실효성</li> </ul>                     | 10점         |
| <b>합 계</b>    |  | <b>100점</b> |
| 우대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급 전략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제주 연출자·제작자의 실질적 참여 구조를 명시(3점)</li> <li>• 진흥원 내 입주기업(2점)</li> </ul>  | 최대 5점       |

-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 예산 한도 내 지원금액 산정
- ※ 모든 우대가점 사항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
- ※ 선정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 승계할 수 있음

## 6. 지원금 지급·집행·정산



## ○ 지원금 지급

- 가. 신청자(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방법,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나. 지원금은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완료 후 100% 일괄 지급
- 다. 신청자(사)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 지원금 집행

- 가. 신청자(사)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를 관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 사업비는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현금 인출 집행 금지)
- 나. 집행기간은 협약서상 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26. 12. 10.)으로 하며 승인된 배급·개봉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 지원금은 배급·유통 관련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제작비 운영비 등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라. 진흥원은 개봉 준비 현황, 상영관 계약 체결 여부, 홍보 실행 현황 등 수행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마. 총사업비 기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바. 협약 종료 1개월 이내에는 예산 변경을 제한함
- 사. 진흥원은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 ○ 지원금 정산

- 가. 신청자(사)는 협약 종료일까지 진흥원이 정한 양식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개봉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개봉 실적 증빙자료 : KOBIS 상영실적 출력본, 상영관 계약서 사본, 상영 스케줄표, 관객참여 프로그램 운영 증빙(사진, 참석자 명단 등)
- 나. 정산범위 : 총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지원금의 10% 이상))
  - ※ 자부담 미이행 또는 축소 집행 시 지원금 감액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 : 공문 및 결과보고서, 개봉 실적 증빙자료,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집행 증빙자료 일체, 회계검증보고서\* 등
  - ※ 결과보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집행 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
- 라. 사업비 사용 결과 부당 집행, 개봉 의무 미이행, 허위 보고 등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 협약기간 연장

- 가. 본 사업은 협약기간 내 개봉 완료를 원칙으로 함
- 나. 다만, 천재지변, 영화상영등급분류 지연, 상영관 계약 변경 등 신청자(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개봉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 공문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 진흥원 승인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라. 협약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연장 기간에 맞게 갱신 제출하여야 함
- 마. 단순 일정 지연, 내부 사정 등 신청자(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 ○ 결과물 귀속

- 가. 저작권은 제작사 또는 감독에 귀속되며, 아래의 활용 권한을 진흥원에 인정함
  -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오프라인 무료사용  
(단, 사용 전 상호 협의 후 진행)
  - 진흥원 시설 운영(스튜디오, 영화관, 공연장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 시사회 개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신청자(사)가 제출한 스틸컷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보도자료 등)

### ○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신청자(사)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나.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비를 영화 유통·배급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신청자(사)가 법령의 규정,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중간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등 결과가 미흡할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수행을 중단·포기하거나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개봉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사업 수행계획이 사전 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거나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사)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작가 포함)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사)가 해결한 후 작품에 사용해야 함
-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사)의 책임으로 봄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